

제7회 민사기록 ‘회사법’ 부분

의뢰인 희망사항 4.

이 사건 회사주주로서, 최금례에게 이전된 풍무동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소 제기를 희망한다.

기록물이 가이드

1. 원고 강주원이 피고 회사에 보낸 통고서(기록 37면)에서 무효라고 생각하는 첫째사유는 정족수에 관한 하자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제1호 안건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는 이유있는 주장이다. (○)

2. 무효라고 생각하는 둘째사유로서 문제되는 것은 ‘타인명의 주식 인수’¹⁾인바, 최근 전합 판례에 따르면 명의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실질주주 황운수에 대해 그 의결권을 부정하는 피고회사의 항변이 타당하다.²⁾ (×)

3. 무효라고 생각하는 셋째사유로서 문제되는 것은 ‘명의개서 부당거절’인바, 이에 대해서는 양도인 박모란의 주식양도에 대한 피고회사에 통지로 명의개서청구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명의개서 미필주주인 한채아의 의결권을 부정하는 피고회사의 항변이 타당하다. (×)

4. 무효라고 생각하는 넷째사유로서 문제되는 것은 ‘주주권의 대리 방법’인바, 위임장원본(原本)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주주권의 위임을 주장하는 이종진의 대리권행사(제368조 제2항)는 불허되므로 피고회사의 항변이 타당하다. (×)

5.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보통결의로 가결하게 되면 이는 결의방법상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제376조)의 사유에 해당한다. 의뢰인이 주총결의 무효라고 운운하는 것은 함정이다.

6.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더불어 최금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문제된다. 말소등기청구는 피고회사가 소유자로서 청구하는 물권(物權)적 청구권이다. 한편 원고 강주원은 회사의 채권자가 아니고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는 주주로서, 피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거나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참고판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등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상의 권리가 아니며, 주주권도 어떤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업무

1) 회사설립이래 주주명부의 변경이 없었으므로(기록 34면),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최초로 회사와 주식 인수 계약했음을 알 수 있다.

2)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집행권 등이나 주주의 주주권에 기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등의 재산상의 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³⁾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2017. 11. 20.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및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외 최금례에게 매각하기로 한 제1호 안건에 관한 결의를 취소한다.⁴⁾⁵⁾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에 대한 청구⁶⁾

(가) 당사자 지위

원고 강주원은 2017. 10. 4. 현재 피고 회사의 1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는 골프연습장 운영사업과 관련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나)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피고 주식회사는 2017. 11.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 부동산 매각의 건(별지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및 제6항 기재 건물을 소외 최금례에게 매매대금 55억 원에 2017년 연말까지 매각한다는 내용)과 제2호 안건 신임이사 선임의 건에 관하여, 발행주식총수 10만주 가운데 소외 나도연(3만주 보유), 원고 강주원(1만주 보유)가 출석하여, 제1호 안건, 제2호 안건이 소외 나도연의 찬성, 원고 강주원의 반대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다) 주주총회 결의방법상의 하자

제1호 안건의 부동산은 피고 주식회사의 유일한 영업용 재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법 총칙상의 전형적인 영업양도(제41조)는 아니지만,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74조의 주주총회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⁷⁾ 따라

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4) 청구취지는 안건별로 취소해야 한다고 기재해야 한다. 문제에서 제1안에만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제1안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라고 기재해야 한다.

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6) 의뢰인 희망사항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소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으며,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습니다.

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서 피고 주식회사가 유일한 영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골프연습장 운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제37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제37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34조). 제1호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만주의 출석과 그 중 3만주의 찬성이 있었는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찬성요건’은 충족하였으나(30,000주 / 40,000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30,000주 / 100,000주) 특별결의 정족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결의방법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제1호 안건은 제376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예상되는 항변

제374조의 영업양도는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안건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374조의 특별결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⁸⁾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 결론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제1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결의방법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2.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생략)

첨부서류(생략)

2018. 1. 1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인)

수원지방법원 귀중⁹⁾

8)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9)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은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376조 제2항, 제186조).